

붙임 5

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서식

서식- 호

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

아동의 인적사항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
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
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
보호자의 인적사항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아동과의 관계	
	주소				연락처	자택 : 휴대전화 :

담당공무원이 이전에 신청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,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보호자 : (서명 또는 날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< 참고사항 :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신청 관련 조항 >

제5조(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법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붙임 7

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서(서식 18호)

서식18호

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					처리기간
					즉 시
신 청 인 (보호자 또는 대리인)		성 명		생년월일	
		주 소	(전화:)		
		보호자와 관계 (대리인의 경우)			
복 지 급 여 계 좌	현 행	금융기관		예 금 주	
		계좌번호			
	변 경	금융기관		예 금 주	
		계좌번호			
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,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_____(서명 또는 인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붙임 6

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(서식 12호)

서식12호-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

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

※ 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6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: 90일	
수급아동	성명 주소	주민등록번호		
변경 전 보호자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	
	전화번호:	휴대전화:	아동과의 관계	
	주소			
변경 후 보호자 (신청인)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	
	전화번호:	휴대전화:	아동과의 관계	
	주소			
입금계좌	은행명 :	계좌번호 :	예금주 :	
보호자 변경 사유	☐ 변경 전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, 보호처분,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☐ 변경 전 보호자가 교정시설,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·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우 ☐ 수급아동에 대해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☐ 수급아동에 대해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☐ 수급아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☐ 변경 전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, 보호처분,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☐ 변경 전 보호자의 성품·행실의 불량,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☐ 그 밖에 변경 전 보호자의 사망, 실종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			
	통지방법	☐ 서면 ☐ 전자우편 ☐ 문자 메시지 ☐ 기타()		

「아동수당법」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자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신청인) :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

1.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보호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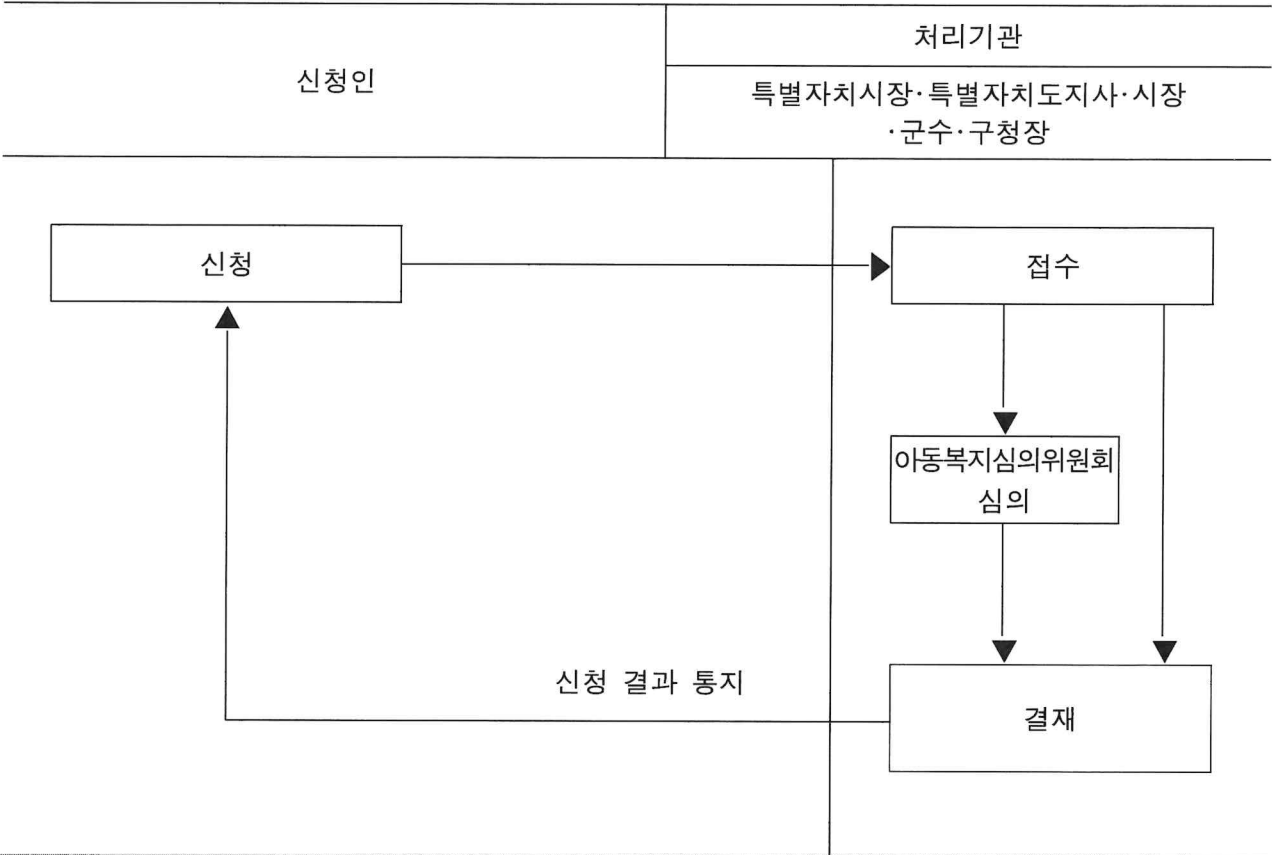
유의사항

「아동수당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유 의 사 항

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